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# 심사 보고서

2005. 7.

행정위원회

#### 1. 審查經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6월 22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7월 1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7월 4일

제114회(제1차 정례회)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#### 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행정관리국장 정진)

##### 가. 개정이유

-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의 수요를 대처할 수 없어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학교환경 개선을 도모
-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력신장을 기하고자 함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규정에 있어 보조기준액을 목적세를 포함한 자치구세의 5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함

##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
  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제3항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17025호)

### 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제)

- 본 조례안은 지원기준을 목적세를 제외한 자치구세의 2% 범위내에서 목적세를 포함한 5%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
- 관계법률을 살펴볼 때
  - 지방세법에서 자치구의 목적세는 사업소세를 규정하고 있으며, 동법 제244조에서 “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”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,
  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특별시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세 해당 금액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,
- 우리구의 교육경비 지원예산도 이에 준하여 목적세를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, 본 개정조례안의 (“목적세를 포함한다”)는 (“목적세를 제외한다”)로 현행 규정과 같이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조사한 바 별지와 같이 서울시 평균은 20,956원이고 가장 높은 중구는 178,838원이며, 우리구의 경우 12,636원으로 이를 자치구 평균까지 높이려면 11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2005년도 세입예산 기준으로 볼 때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목적세 제외 5% 안을 따를 경우 최대 29억까지 예산편성 가능하고,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금은 52,351원으로 중구, 강남구, 서초구를 제외한 가장 높은 지원구가 될 것임.

### 4. 修正案 要旨

#### 가. 수정요지

- 안 제3조에서 자치구세(목적세 포함) 5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목적세를 제외토록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어, 목적세를 제외하고 3%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“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(목적세를 포함)의 5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(목적세를 제외)의 3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로 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로 수정함.

5. 審査結果 : 修正案 可決

**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증개정  
조례안에대한수정(안)**

의안 번호	관련 159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7. 4.  
제출자 : 김영진 위원

### 1. 수정이유

교육경비 지원시 지방세법에 목적세를 제외하고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부칙에 시행일을 수정

### 2. 주요내용

- 안 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“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(목적세를 포함)의 5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(목적세를 제외)의 3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함.
- 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로 함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 
수정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

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“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  
치구세(목적세를 포함)의 5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를  
“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비 보조기준액을  
자치구세(목적세를 제외)의 3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로

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 
“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로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 
수정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(목적세를 제외한다)의 2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</p>	<p>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(목적세를 포함)의 5%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(목적세를 제외)의 3%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<u>이 조례는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6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의 수요를 대처할 수 없어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학교환경 개선을 도모
- 폐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력신장을 기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규정에 있어 보조기준액을 목적세를 포함한 자치구세의 5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항
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제17025호)

나. 예산조치 : 2006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예정

다. 합의 : 필요없음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( <u>목적세를 제외한다</u> )의 2%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..... .....자치구세 ( <u>목적세를 포함</u> )의 5%범위내에서 ..... .....있다.